

# 朝鮮前期의 祿俸制

李 載 薰\*

## 序 言

- I. 祿俸의 支給 對象과 그 類別
  - II. 祿俸 頒給의 內容과 節次
  - III. 祿俸의 財源
  - IV. 官僚體制의 解弛와 祿俸制의 紊亂
- 結 語

## 序 言

朝鮮王朝時代의 官僚體制에 대한 究明은 王朝國家의 基本性格을 解明하는데 切實한 問題이다. 그리하여 官僚에 대한 處遇 내지는 그들에 대한 生活保障과 直結되는 祿俸制에 대한 究明은 兩班官僚國家의 官僚體制의 解明에 重要한 問題라고 생각된다.

兩班官僚層의 經濟的 基盤은 그들에게 班給된 土地를 비롯하여 農莊에 그 根據를 두었다고 생각해 버리기 쉬우나 祿俸도 官僚層의 經濟的 生活保障에 적지 않은 比重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官僚에게 주어지는 科田(職田)이나 功臣田·別賜田 등의 賜田과는 또 달리 全國 收租地 總結數 중에 祿科田의 制度로서——위의 國用田 制度 以後에도——祿俸을 통하여 莫大한 土地의 收租量을 支配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祿俸은 官僚의 經濟的 生活保障이라는 面에서 뿐 아니라 그들의 社會的 地位와 直結되는 官職과 보다 重要한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朝鮮前期의 土地制度에 관한 研究는 수다하게 이루어졌으나 祿俸制에 대한 研究는 전혀 없는 형편이다. 이에 필자는 朝鮮王朝의 官僚體制를 念頭に 두고 祿俸의 支給 對象의 範圍와 그 類別을 밝히고, 祿俸 頒給의 內容과 節次를 살펴보고, 그 祿俸의 財源을 國家財政面에서 詳考하며, 나아가 官僚體制의 解弛에 따라 祿俸制가 紊亂해진 그

\*文理科大學(서울) 史學科 教授

實態를 차례로 考究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朝鮮前期의 祿俸制에 대한 考究를 통하여 兩班官僚體制에 대한 理解와, 나아가 集權的 兩班官僚國家의 性格을 解明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 I. 祿俸의 支給 對象과 그 類別

祿俸은 원래 「祿」과 「俸」으로 區別되어 왔다. 高麗時代의 祿俸制에 있어서도 給祿과 給俸이 區別되어 있었으니, 高麗史 卷 80, 食貨 3, 祿俸條 序文에서,

「안으로 妃主·宗室·百官과 밖으로 三京·州府郡縣에는 모두 祿이 있으며, 雜職·胥吏·工匠에 이르기까지 職役이 있는 자에게는 모두 常俸이 있다」

라는 것이 그것이다. 즉 妃主·宗室이나 文武 百官에게는 祿이 주어지고, 雜職·胥吏·工匠에게는 常俸이 주어졌다. 祿이 아닌 常俸은 雜職·胥吏·工匠에게 俸食雜用으로 주어진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朝鮮時代의 祿俸제도 대체로 高麗時代의 祿俸制를 계승하였으며, 祿科와 月俸은 區別되었다. 太宗 元年에 太上殿의 女官에게 月俸을 給與하는 마당에서, 「女官에게 祿을 주는 것은 未便하니 차등있게 俸을 준다」라는<sup>(1)</sup> 것으로 祿과 俸을 區別하고 있다. 또 軍士 중에는 受祿 軍士와 受料 軍士로 區別되기도 하였으며, 흔히 軍士를 優待하자는 의론에서 月俸(또는 料) 대신 祿을 支給하자는 提議를 散見하는 바이다. 그리고 文宗 即位年에 王이 河濱, 皇甫仁 등을 불러 議論하는 자리에서, 「內侍府·掖庭署의 官員은 散官으로서 料를 받으나 受職하면 祿을 받는다」라고<sup>(2)</sup> 함에서도 祿과 料는 區別되고 있다. 위와 같이 祿俸은 祿과 俸, 祿과 料로 對比된 用語이거나, 祿은 受祿, 給祿, 祿科 등으로 表記되고, 俸은 常俸, 月俸, 給俸 등으로 表記되는 바이나, 俸 대신 料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料는 受料, 朔料, 日料 등으로 表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祿과 俸(또는 料)이라는 用語를 區別하지 않고 막연하게 祿俸으로 表現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祿과 俸의 用語概念에 있어서, 祿은 四孟朔 즉 3個月마다 頒給되는 경우와 이에 準하는 경우이며, 俸 또는 料는 그 밖에 月別 以下로 給與를 支給하는 경우인 것으로 생각된다.

祿俸이 支給되는 對象은 宗親·異姓의 封君을 비롯하여 文武官員과 雜職·工匠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 具體的인 內容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經國大典 戶典 祿科條에는 「各科祿은 實職에 따라 四孟朔으로 頒賜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官員이 實職이라 하여 科祿이 頒賜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官員이 實職인 것도 아니었다. 이

(1) 太宗實錄 卷 1, 太宗 元年 3月 戊辰條.

(2) 文宗實錄 卷 2, 文宗 即位年 6月 戊戌條.

제 편이상 京官祿과 外官祿으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京官祿은 다시 편이상 東班職과 西班職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東班職 중에는 實職에 따라 科祿이 頒賜되는 以外에 兼職의 職窠가 많았으며, 無祿官이라고 하여 祿이 없는 官員이 있었다. 經國大典에 의거하여 東班職의 兼職된 職窠를 가려내면 堂上官만의 경우 實職은 84名인데 비하여 兼職이 약 130職窠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無祿官이라 함은 義禁府의 堂上官 및 各 衙門의 提學·提檢·別坐·別提·別檢 등이 그것이며, 經國大典에 보이는 無祿官의 數는 義禁府 堂上官을 除外하고 총 89名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東班職 중에 堂上官의 경우에는 實職보다도 兼職의 職窠가 더 많으며 參上官의 경우에는 89名에 달한 無祿官이 配置되어 있었다.

그 밖에 東班職에는 東班屬衙門遞兒와 東班屬衙門雜職遞兒가 있다. 東班屬衙門遞兒職에는 醫·譯·算·觀象·律·寫字 등의 技術과 事務의 實務로서 中央官府에 世襲하는 技術職 및 內侍府의 官員 등으로서 총 156員이 있다. 그리고 東班屬衙門의 雜職遞兒에는 工曹·校書館·司膳寺·造紙署·尙衣院·軍器寺·繕工監의 「工匠」校書館의 「守藏諸員」司饗院의 「飯監·色掌」司僕寺의 「馬員」掌樂院의 「樂師·樂生·樂工」昭格署의 「道流」掌苑署의 「別監」掖庭署의 「掖隸」圖書院의 「畫員」등인데 受職對象者의 人員數는 3,350員에 달하나 그 遞兒職의 數는 142員이며, 그들은 대개 賤流로서 受職되었다. 이들 遞兒職을 受職하는 자에게는 實職에 의한 科祿과는 달리 遞兒祿이 支給되는 것이었다.<sup>(3)</sup>

東班職에는 이밖에도 宗親府·忠勳府·儀賓府·敦寧府·奉朝賀 등이 있었으니, 宗親府 소속의 宗室諸君, 忠勳府 소속의 功臣과 儀賓府 소속의 駙馬 등이 定數 없이 受職되었고, 敦寧府 소속으로 王親·外戚으로 19員이 受職되었으며, 奉朝賀로 實職 堂上官을 經歷한 散官에게 付祿의 職으로 15員이 受職되었다.

散官에 대한 給祿은 建國初부터 冗官의 淘汰와 더불어 檢校散官의 祿俸支給에 대하여 指彈이 되어 왔다. 檢校 各品の 祿은 建國初 이래 일반적으로 本品科보다 三等을 낮추어 支給되었거니와, 論難의 對象이 되어 온 檢校制는 太宗 16년에 革罷되었다. 그러나 有祿檢校官의 革罷 이후 70歲 以上 有功者는 檢校로서가 아니라 致仕者 受祿의 形式으로 증진의 檢校 祿科에 의거하여 支給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內侍府 檢校만은 그대로 存置되어 오다가 世宗 25년에 이르러 그것마저도 革罷되고 말았다.<sup>(4)</sup> 그러나 內侍府 檢校가 革罷된 이후인 文宗 即位年에 王이 皇甫仁 등의 宰相을 召見하여 의론하는 자리에서,

「宦豎置散 則每月受料十八斗 受職則依科受祿 然其料數 與八品祿相同 故宦豎皆欲受料 而不欲受九品之祿」

(3) 拙稿, 朝鮮前期 遞兒職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35·36合輯, 1967. pp. 205—207.

(4) 韓洵, 勳官「檢校」考, 震檀學報 29·30合併號, 1966. pp. 98—114.

이라고<sup>(5)</sup> 하는 것으로 보아, 內侍府의 宦官이나 掖庭署의 掖庭은 散官이 되어도 料를 받았으며 도리어 受職하여 依科受祿하는 數量보다 더 좋은 報酬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制度上으로는 70歲 以上の 致仕者에게만 祿俸을 支給하는데 그치었다 하나, 이와 같이 內侍府의 宦官이나 掖庭署의 掖庭이 散官으로 祿俸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世祖가 即位하여 同王 3년에 奉朝請의 法을 세워 功臣, 功臣嫡長 및 東西班 堂上官 內에 奉朝請에 應한 자 등에게 각각 科를 나누어 給祿하도록 措處하였다.<sup>(6)</sup> 奉朝請은 원래 官職이 一品에 이르고, 年 70歲 以上으로 致仕하지 못한 자에게 几杖을 賜한 것이었는데,<sup>(7)</sup> 世祖 3년에 마련한 奉朝請의 制度는 功臣, 功臣嫡長 및 東西班 堂上官에게 給祿의 恩典이 배풀어진 것이다. 建國初에 檢校散官에 대한 弊害가 論議되어, 有祿檢校의 制가 太宗 16년에 革罷되었고, 內侍府檢校도 世宗 25년에 革罷된 것이었으나 文宗 때에도 內侍府의 宦官과 掖庭署의 掖庭은 散官으로서도 受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모처럼 整備된 散官에 대한 給祿의 制限을 풀어주게 한 것이니, 그것은 世祖가 平和的인 王位繼承이 아니라는 점과 聯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經國大典에서 奉朝賀는 15員으로 定員이 配定되어 있는 것이다. 世祖 12년에 職田法의 實施에 따라 散官에게 職田이 給與되지 않게 된 措處와 함께 奉朝賀 15員 以外에는 散官에 대한 祿俸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울러 고려할만 하다.

다음으로 西班職은 中樞院을 비롯하여 五衛都總府·五衛·訓練院·內禁衛·世子翊衛司 등의 衙門이 있었으나, 五衛를 除外하면 겨우 50餘 職窠에 不過할 뿐만 아니라, 그 大部分의 職窠는 他官으로 兼職되는 것이었다. 다만 五衛의 軍職은 3,282員인데 그것은 모두 遞兒職으로 受職되는 것이었다. 西班遞兒 중에서도 雜職遞兒가 있었으니 소위 三軍邑이라 불리우던 隊卒·彭排·破陣軍에게는 雜職遞兒가 주어졌다. 아 물론 西班職은 거의 遞兒職으로 受職되었기 때문에 遞兒祿으로 支給되는 것이다.

外官祿은 經國大典 戶典 祿科條에 의하면, 「各道の 觀察使·都事·節度使, 兩界의 虞候·評事는 祿이 있으나, 挈家한 觀察使와 節度使에게는 祿이 없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建國初 이래 觀察使·都節制使·處置使·經歷·都事 등이 모두 京官으로 兼差되어 있었다. 世宗 9년에 左司諫 金涉 등의 上疏에서, 觀察使·都節制使·處置使·經歷·都事 등의 地方官이 모두 京官으로 倂兼되고 있는 까닭에 그 弊端을 들어 反對하였으나 是正되지 않았다.<sup>(8)</sup> 그리고 各道の 觀察使·節制使·處置使·經歷·都事 등이 京官으로 兼差되어 이들에게 주어진 京官祿은 대략 3千餘石이었다 한다.<sup>(9)</sup> 都節制使는 世祖 12년에 節度使의 職脚이 되었거니와, 京官祿이

(5) 註 2와 同.

(6) 世祖實錄 卷 8, 世祖 3年 7月 丙寅條.

(7) 世宗實錄 卷 88, 世宗 22年 3月 戊午條.

(8) 世宗實錄 卷 36, 世宗 9年 4月 甲子條.

(9) 世宗實錄 卷 66, 世宗 16年 10月 乙卯條.

주어지지 않았던 平安道 都節制使에게는 文宗 元年에,<sup>(10)</sup> 咸吉道 都節制使에게는 世祖 6년에 給祿하도록 措處되었으며,<sup>(11)</sup> 虞候는 兩界 外에는 給祿되지 않았다.

각 州縣의 守令에게는 一定한 祿俸의 定額이 없고 衙祿田이라는 廩田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諸鎭將에게는 그들이 대체로 守令으로서 兼職되어 있었기 때문에 州縣에 주어진 衙祿田 以外에 따로 衙祿田이 支給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衙祿田이나 官屯田이 없는 獨鎭인 僉使·萬戶와 虞候·敎官 등은 軍資에서 供給을 받도록 規制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鄉吏들에게는 祿이 없었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祿俸의 支給 對象은 위로 宗室諸君, 駙馬, 王親, 外戚, 功臣, 文武百官으로부터 아래로 技術과 事務의 實務로서 中央官府에 世襲하는 技術職, 內侍府의 宦官, 賤流 受職人에 이르기까지 그 身分層으로 보아 廣範圍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官員이 모두 祿俸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즉 受祿의 官員과 無祿官이 있었으며, 受祿의 官員 중에는 實職에 따라 科祿을 받는 官員과 遞兒祿을 받는 官員 그리고 少數이기는 하지만 散官祿을 받는 官員 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 특히 朝鮮時代의 祿俸制는 京官 爲主로서 원칙적으로 外官에게는 祿俸의 定額이 없었다. 다만 京官으로 兼差된 觀察使·節度使·都事와 兩界의 虞候·評事만이 祿이 있었다. 각 州縣에서는 衙祿田이라는 廩田이 있고, 衙祿田도 없는 外官이 많아, 外官의 祿은 定해 있지 않으며, 守令의 所俸은 각각 다르고 그 出處가 同一하지 않아 加歛을 일삼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또 兵·水使 以下の 諸鎭將도 俸祿이 없어 放軍收布하여 廩祿에 대신하게 된 것이다. 祿俸의 制가 京官祿 爲主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朝鮮王朝의 中央集權的 官僚國家의 特性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거니와, 이제 京官 爲主로 運營되는 頒祿의 內容과 그 節次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Ⅱ. 祿俸 頒給의 內容과 節次

朝鮮王朝가 開創한 이래 國家財政을 確保하여 祿俸의 充當에 努力하는 한편 祿科를 整備하였다. 朝鮮經國典 賦典 祿俸條에 의하면, 「一品으로부터 九品에 이르기까지 18科로 나누어 頒賜하되 三司에서 祿牌를 分給하여 廣興倉에서 支給하도록 한다」하였다. 즉 高麗 祿俸制는 文宗朝 47科의 等分이 仁宗朝의 更正祿科에서 28科로 整備되었다 하거니와, 朝鮮 建國初에 18科로서 새로운 祿科로 整備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建國初의 祿科의 內容에 대해서는 그 記錄을 찾아볼 수 없어 詳考할 길이 없다. 그리하여 朝鮮王朝에 있어서 最初의 祿科 內容이 보이는 것은 太宗 7年の 일이다. 太宗 7年 正月에 左政丞 河崙이 各品の 祿科가 한결 같지

(10) 文宗實錄 卷 8, 文宗 元年 6月 己卯條.

(11) 世祖實錄 卷 11, 世祖 6年 閏 11月 壬申條.

아니하다 하고, 그 增減 詳定을 啓請하였던 바, 이에 百官祿科가 更正되었는데, 그 內容은 第1科로부터……第5科, 同5科……第18科 및 權務에 이르기까지 총 20等級으로 되어 있고, 第1科 在內大君·政丞已上은 祿米 100石, 細布·正布를 합하여 32匹이며, 第18科 從九品은 祿米 14石, 正布 4匹로 되어 있다.<sup>(12)</sup> 이 科祿의 數量은 第1科의 경우, 高麗 仁宗朝 更正祿科에서 宗室의 最高 頒賜額 600石, 文武官의 最高 頒賜額 400石에 比하여 大幅 減少된 것이라 하겠다.

頒祿의 時期는 麗代의 것을 襲用하여 每年 正月과 七月의 두 차례에 걸쳐 初·二番으로 나누어 支給되었다. 그러나 世宗 17년부터 初·二番 頒祿을 四孟朔 頒祿으로 바꾸자는 議論이 일어나더니,<sup>(13)</sup> 마침내 世宗 21年 正月부터 四孟朔 頒祿의 制로 바뀌었다. 그 理由인즉 初·二番 頒祿이 끝난 뒤에 赴任한 官員은 執務에 勤勞하여도 受祿하지 못하는 弊端이 있을 뿐만 아니라, 祿俸米의 轉輸問題를 圓滑하게 할 수 없으며, 아울러 傳請의 번거로움을 덜 수 없었는데 있었다. 마침 世宗 20년에 初·二番 頒祿으로 因하여 忠淸道의 歲前收稅, 漕運의 弊가 더욱 甚하다는 것을 理由로 世宗 21년부터 四孟朔 頒祿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sup>(14)</sup>

世宗 21년에 詳定된 四孟朔 頒祿의 制에 의한 祿科의 內容은 中宗 正月과 7月의 初·二番의 頒祿이 春·夏·秋·冬의 孟朔인 正月·4月·7月·10월에 頒祿되었거니와 各科마다 1年 總支給量으로 보면 아무런 增減이 없다. 그러나 太宗 7年の 各科 頒賜額과는 多少의 減額이 있으니 太宗 7年에서 世宗 20年까지의 사이에 그 數量이 調整된 것이겠는데 記錄에 보이지 않으니 언제 減額되었는지 알 수 없다. 世宗 21년에 四孟朔 頒祿의 制는 經國大典에 거의 그대로 規定되어 있거니와 다만 權務의 祿만은 削除되어 있으며, 錢이 楮貨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 經

(12)	科 品	祿米(石)	布(匹)
第一科	在內大君 政丞已上	100	32(細布·正布共)
第二科	在內諸君 議政府贊成已上	90	27( " )
第三科	異姓諸君 開城留後已上	85	26( " )
第四科	異姓諸君 開城副留後已上	80	26( " )
第五科	[正三品 成均大司成已上	70	23( " )
	[判典醫監事已上	68	23( " )
第六科	從三品	65	20( " )
第七科	正四品	60	20( " )
第八科	從四品	50	19( " )
第九科	正五品	49	18( " )
第十科	從五品	47	17( " )
第十一科	正六品	42	16( " )
第十二科	從六品	40	15( " )
第十三科	正七品	30	10(正 布)
第十四科	從七品	28	9( " )
第十五科	正八品	23	7( " )
第十六科	從八品	21	6( " )
第十七科	正九品	16	5( " )
第十八科	從九品	14	4( " )
權 務		9	3( " )

(13) 世宗實錄 卷 68, 世宗 17年 6月 丙申條.

(14) 世宗實錄 卷 82, 世宗 20年 7月 癸卯條. 世宗實錄 卷 84, 世宗 21年 正月 丙戌條.

國大典에 規定된 各品の 祿科는 別表와 같거니와, 各科祿은 實職에 따라 頒賜한다 하였으니, 「階高職卑」의 行職의 경우에는 實職에 따라 頒賜되는 것이며, 「階卑職高」의 守職의 경우에는 그의 本階品을 넘어 受祿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經國大典에 이르러 實職에 의한 頒祿이 이루어지기까지, 外官이지만 京官으로 兼

別 表

科	品		中米 (石)	糙米 (石)	田米 (石)	黃豆 (石)	小麥 (石)	紬布 (匹)	正布 (匹)	楮貨 (張)
第一科	正一品	春	4	12	1	12	—	2	4	10
		夏	3	12	—	—	5	1	4	—
		秋	4	12	1	—	5	1	4	—
		冬	3	12	—	11	—	2	3	—
第二科	從二品	春	3	11	1	11	—	2	4	10
		夏	3	11	—	—	4	1	4	—
		秋	3	10	1	—	5	1	4	—
		冬	3	11	—	10	—	1	3	—
第三科	正二品	春	3	10	1	9	—	2	4	8
		夏	3	10	—	—	4	1	3	—
		秋	3	10	1	—	5	1	4	—
		冬	3	10	—	9	—	1	3	—
第四科	從三品	春	3	9	1	9	—	2	4	8
		夏	3	10	—	—	4	1	3	—
		秋	3	9	1	—	4	1	4	—
		冬	3	9	—	8	—	1	3	—
第五科	正三品 (堂上官)	春	3	8	1	8	—	1	4	8
		夏	3	8	—	—	3	1	3	—
		秋	3	8	1	—	4	1	3	—
		冬	2	8	—	7	—	1	3	—
同五科	正三品	春	3	7	1	8	—	1	4	8
		夏	2	8	—	—	3	1	3	—
		秋	3	7	1	—	4	1	3	—
		冬	2	8	—	7	—	1	3	—
第六科	從三品	春	3	7	1	7	—	1	4	6
		夏	2	7	—	—	3	1	3	—
		秋	3	6	1	—	4	1	3	—
		冬	2	7	—	7	—	—	3	—
第七科	正四品	春	2	6	1	7	—	1	3	6
		夏	2	7	—	—	3	—	3	—
		秋	2	6	—	—	3	1	3	—
		冬	2	6	1	6	—	—	3	—

第八科	從四品	春夏	2	6	1	6	—	1	3	6
		夏	2	6	—	—	3	—	3	—
		秋	2	5	1	—	3	1	3	—
		冬	2	6	—	6	—	—	2	—
第九科	正五品	春夏	2	5	1	6	—	1	3	4
		夏	1	6	—	—	2	—	3	—
		秋	2	5	1	—	3	—	3	—
		冬	1	5	—	5	—	—	2	—
第十科	從五品	春夏	2	5	1	5	—	1	3	4
		夏	1	5	—	—	2	—	2	—
		秋	2	5	1	—	3	—	3	—
		冬	1	5	—	5	—	—	2	—
第十一科	正六品	春夏	2	4	1	5	—	1	3	4
		夏	1	5	—	—	2	—	2	—
		秋	1	5	1	—	2	—	3	—
		冬	1	4	—	4	—	—	2	—
第十二科	從六品	春夏	2	4	1	4	—	1	3	4
		夏	1	5	—	—	2	—	2	—
		秋	1	4	1	—	2	—	2	—
		冬	1	4	—	4	—	—	2	—
第十三科	正七品	春夏	1	3	1	3	—	—	2	2
		夏	1	4	—	—	1	—	2	—
		秋	1	4	1	—	2	—	2	—
		冬	—	4	—	2	—	—	1	—
第十四科	從七品	春夏	1	3	1	2	—	—	2	2
		夏	1	4	—	—	1	—	1	—
		秋	1	3	1	—	2	—	2	—
		冬	—	4	—	2	—	—	1	—
第十五科	正八品	春夏	1	3	1	2	—	—	1	2
		夏	1	3	—	—	1	—	1	—
		秋	—	3	—	—	1	—	1	—
		冬	—	3	—	2	—	—	1	—
第十六科	從八品	春夏	1	2	1	2	—	—	1	2
		夏	—	3	—	—	1	—	1	—
		秋	1	2	—	—	1	—	1	—
		冬	—	3	—	2	—	—	1	—
第十七科	正九品	春夏	—	2	1	2	—	—	1	1
		夏	—	2	—	—	—	—	1	—
		秋	—	2	—	—	1	—	1	—
		冬	—	2	—	1	—	—	1	—

第十八科	從九品	春	—	2	1	1	—	—	1	1
		夏	—	2	—	—	—	—	—	—
		秋	—	2	—	—	1	—	1	—
		冬	—	2	—	1	—	—	—	—

差되던 觀察使, 經歷, 都事 등과 宗親·外戚·駙馬 등의 封君은 實職에 의하여 頒祿되는 것이 아니었다. 各道의 觀察使, 節度使, 經歷, 都事 등의 祿俸은 實職에 따르되 一等을 낮추어 頒給되는 것이 慣例가 되어 있었다.<sup>(15)</sup> 또 功臣·宗親·外戚封君은 太祖 때 이래 實職보다 一等을 降하여 給祿하여 왔거니와, 太宗 12年 正月에 外戚封君은 다시 一等을 降하여, 즉 本品科보다 2等を 降하여 給祿되었다.<sup>(16)</sup> 그리고 太宗 12年 6월에 宗親頒祿의 制를 詳定하였는데, 既得權이 있는 正一品만은 降一等하고, 從二品 以下 正四品에 이르기까지는 각각 三等을 降하여 頒祿케 하였다.<sup>(17)</sup> 그러던 중, 太宗 17년에는 宗室諸君, 駙馬諸君, 異姓諸君과 敦寧府의 僉事·知府事 以上の 祿科가 詳定되었다. 즉 宗室 및 駙馬諸君은 散官祿에 따르도록 하되 大君만은 第一科에 3石을 加上하게 하고, 異姓諸君은 모두 實職에 따라 支給하며, 敦寧府의 領府事·判府事를 除外한 知府事·同知府事·僉知府事 등은 一等을 遞降하여 給祿케 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은 狀況은 그 때까지도 宗室·駙馬·王親·外戚諸君의 品階가 제대로 制度化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그들은 五·六品 除授者도 階는 높지 堂上官에 올라 있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經國大典 당시까지에는 宗室·駙馬·王親·外戚諸君의 職秩이 詳定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祿俸도 實職에 따라 頒祿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祿俸의 頒賜日은 第一科에서 第六科까지는 8日에, 第七·八科는 9日에, 第九·十科는 10日에, 第十一·十二科는 11日에, 第十三·十四科는 12日에, 第十五·十六科는 13日에, 그리고 第十七·十八科는 14日이었다. 이와 같이 品에 따라 祿俸의 頒賜日이 다른 것은 아마도 支給에 있어서의 煩雜을 덜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東班의 實職을 받은 官員 以外에 大部分의 官員이 遞兒職으로 受職되고 遞兒祿을 받았다는 것은 앞서 말해둔 바 있거니와, 遞兒란 定祿이 없고 四時로 考講하여 그 成績에 따라 서로 高下를 바꾸어 付祿하는 것이다.<sup>(19)</sup> 이제 遞兒祿이 어떻게 支給되는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朝鮮 建國初에 基幹兵인 甲士 등은 實職의 軍職으로서 受祿하였던 것이나, 別侍衛·內禁衛 등의 特殊兵이 新設되면서, 世宗初에 實職의 軍職에서 遞兒職으로 바뀌었으며, 世宗代 後半에 이르러서는 모든 軍職이 遞兒職이 됨과 아울러 宗親의 有祿軍士의 處遇에는 變化가 뒤따

(15) 世宗實錄 卷 106, 世宗 26年 11月 癸巳條.  
 (16) 太宗實錄 卷 23, 太宗 12年 正月 己丑條.  
 (17) 太宗實錄 卷 23, 太宗 12年 6月 戊午條.  
 (18) 太宗實錄 卷 34, 太宗 17年 12月 丁未條.  
 (19) 「無定祿 而四時考講 以其分數 遞相高下付祿 謂之遞兒」 礪溪隨錄 職官之制 下.

라 大部分 月俸을 받는 有料軍士가 되고 말았다.<sup>(20)</sup> 世宗 27年 議政府의 上啓에 의하면, 甲士·銃筒·防牌·近仗·攝六十 등의 兵種이 모두 給祿이 아닌 月俸으로 策定되어 있으며, 基幹兵이라 할 甲士마저도 司直 以下는 給祿치 않아 月俸을 받는 有料軍士로 轉落되고 있다.<sup>(21)</sup> 이 때에 受祿軍士는 다만 特殊兵인 內禁衛·別侍衛·忠順衛 등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世祖 때에 이르러 甲士는 月俸 대신 給祿되었거니와 餘他の 軍兵도 受料軍士에서 受祿軍士로 바뀌어 經國大典에는 彭排와 隊卒만이 月俸을 받도록 되어 있다.

遞兒祿이 어떻게 支給되었는가에 대하여는 大典註解 番次都目條에 소상하게 註解되고 있으니 이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番次都目	祿俸	對象種別
①	長番兩都目	四孟朔 連等受祿	宣傳官·兼司僕·內禁衛·功臣嫡長
②	長番四都目	以仕多少 各等受祿	族親衛·忠義衛
③	二番兩都目	當番四孟朔 連等受祿	親軍衛
④	五番·六番兩都目·三都目	各其當番 一等受祿	別侍衛·甲士
⑤	五番·六番兩都目·三都目	以仕多少 付祿	忠贊衛·吹螺赤·大平簫·弓人·矢人·諸員·壯勇衛·隊卒·彭排·破敵衛
⑥		各其遞兒 相遞受祿	醫員(議政府·六曹·忠勳府·宗親府·都摠府)
⑦		以親着多少 連等受祿(親着者正月付祿仍受四月祿之類)	濟州子弟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遞兒職 受職者의 祿俸인 遞兒祿은 그들의 番次나 都目に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즉 ① 宣傳官, 兼司僕, 內禁衛, 功臣嫡長 등은 全員이 長番으로 入番하고, 兩都目으로 四孟朔 頒祿에 항상 受祿하는 경우로서 實職의 頒祿과 同一하다. ② 族親衛와 忠義衛는 定員이 없으며, 長番으로 入番하되, 仕의 多少에 따라 四都目으로 各等受祿하는 것이니, 一年에 一等受祿, 혹은 二等, 三等, 四等受祿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다. ③ 親軍衛는 二番으로 十二朔相遞이니 當番 期間中의 一年間은 四孟朔에 連等受祿하는 것이다. ④ 別侍衛와 甲士는 五番으로 六朔相遞인데, 例컨대 正月에 入番하면 四月에 受祿하고 七月에 作散하는 것으로, 各其 當番에 一等受祿하는 것이다. ⑤ 忠贊衛·吹螺赤·大平簫·弓人·矢人·諸員(承文院·尙衣院·司甕員·司僕寺·典設司)·壯勇衛·隊卒·彭排·破敵衛 등은 五番 혹은 六番으로 入番하여, 兩都目 혹은 三都目으로, 仕의 多少에 따라 付祿되는 것이다. 仕에는 元仕와 別仕가 있으며, 遞兒에는 元·別仕를 合計하여 除授하게 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彭排와 隊卒은 月俸을 支給하였거니와 餘他の 對象에는 月俸인지 給祿인지 仔細치 않다.

(20) 拙稿 前揭書, pp. 185—192.

(21) 世宗實錄 卷 109, 世宗 27年 7月 庚寅條. 甲士는 每一人 月給俸米 20斗(司直以下 不給祿), 銃筒은 每一人 月給俸米 6斗, 防牌는 當番 每一人 月給俸米 15斗(皆不給祿), 近仗과 攝六十은 當番 每一人 月給俸米 12斗 등으로 軍兵의 月俸이 策定되어 있다.

⑥ 議政府·六曹·忠勳府·宗親府·都摠府 소속의 醫員은 番次가 없고 각각 交代하면서 遞兒職을 받아 受祿되는 것이다. ⑦ 濟州子弟는 番次가 없이 親着의 多少에 따라 連等受祿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連等受祿이라고 함은 例컨대 正月에 付祿하여 四月祿을 받는 것을 뜻한다.

위와 같이 遞兒祿은 對象者에 따라 多樣하게 支給되는 것이어서, 위로는 實職과 같이 四孟朔마다 頒祿되는 경우로부터 아래로는 仕의 多少에 따라 月俸을 받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그리고 遞兒祿은 經國大典 吏典 遞兒條에 「祿毋越階 不授守職 兒隨下階 如應授正九品職者 階九品則降授從九品之類」라고 하였으니, 階高職卑한 守職을 받은 者의 祿은 그 自身の 階에 의하여 受祿되어야 함은 물론, 「兒隨下階」라 하여 例컨대 正九品 受職者라 할지라도 從九品の 祿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經國大典 兵典 五衛와 番次都目條에 보이는 遞兒의 品階를 보면 正三品 3員을 除外하면, 四品으로부터 九品에 이르기까지 遞兒職에는 正品이 없고 從品만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음 散官祿으로서 建國初 이래 檢校의 祿科가 있다. 檢校의 祿科는 처음 本品科보다 三等을 降하여 왔거니와, <sup>(22)</sup> 太宗 15年 正月에 이르러 內侍府 檢校 資憲以下 및 東班檢校 參贊以下の 祿科가 始定되었는데, <sup>(23)</sup> 이에 마지막 손질을 더하여 太宗 15年 6月에 檢校 各品の 祿科가 整備되었다. 이 때에 整備된 檢校 祿俸은 正一品이 正四品科의 祿俸, 正·從六品이 正九品科의 祿俸을 받도록 規定되어 있어 대체로 本品科보다 5, 6等を 낮추어 受祿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功臣 親父의 檢校 祿科만은 종전대로 支給토록 규정되고 있다. <sup>(24)</sup> 그러나 太宗 16年 6月에 東西班 檢校 職制가 革罷되고, 다만 各品 致仕者의 祿科는 종전의 各品 檢校 祿科에 의하여 支給하도록 措處되었다. <sup>(25)</sup> 그리고 內侍府 檢校만은 存置되었다가 世宗 25年에 이르러 그것마저도 革罷되었으며 經國大典에는 散官祿으로서 다만 15員의 奉朝賀가 配定되어 있을 뿐이라고 함은 前述한 바와 같다. 奉朝賀의 散官祿은 적어도 5等 이상 降等한 祿科이다.

東西班을 막론하고 모든 受職者는 官吏로 叙任되는 辭令狀인 告身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五品 이하는 臺諫의 署經을 거쳐 告身을 給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軍士 五品 이하 遞兒受職者는 告身을 成給하되 각각 그 入直日에 入直堂上官이 前受의 告身을 考하여 分給하되, 受祿한 후 臺諫이 檢覈하여 滿2個月이 지나도록 前受告身을 不納한 자는 그 告身을 沒收함과 동시에 그 祿을 徵하도록 되어 있다. 兩界 軍士의 告身도 그 道에 送付하여 監司가 前受告身을 考하여 分給하되, 受祿 후 滿 2百日이 넘도록 前受告身을 司諫院에 不納한 자는 그 告身을 沒收하고 祿을 徵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모든 官員에게는 官吏로 叙任되는 辭令狀인 告身이 分給되며, 告身に 따라 受祿

(22) 太祖實錄 卷 5, 太祖 3年 正月 戊午條.

(23) 太宗實錄 卷 29, 太宗 15年 正月 乙巳條.

(24) 太宗實錄 卷 29, 太宗 15年 6月 乙亥條.

(25) 太宗實錄 卷 31, 太宗 16年 6月 辛巳條.

者는 每春孟朔에 祿牌를 받아 受祿하였다. 東西班 祿牌는 吏曹와 兵曹가 각각 分掌하였다. 그런데 中外 官吏 중, 遷官의 경우에는 前任의 解由를 상고하여 祿牌를 주게 되어 있다. 解由란 官吏가 遞代할 때 管掌한 物件의 虧欠이 없는 자에게 事務引繼에 있어서 財政上의 瑕疪가 없다는 것을 證明하는 制度인 것이다.

祿科의 頒給에 있어 그 施行細則이 經國大典 戶典 祿科條에 併記되어 있으니 이를 소개하면, ① 有故의 科內 未受者에 대한 措處 ② 京中番上軍士 및 兩界赴防軍士의 除授日 起算 指針 ③ 兩界守令·僉節制使·萬戶의 程途日限 計算 指針 ④ 出使人의 當喪 또는 死亡한 때에 대한 措處 ⑤ 守令 遞任者가 公務로 因하여 늦게 赴任할 때에 대한 措處 ⑥ 公主·翁主의 卒時 夫職대로의 支給 規定 ⑦ 觀察使, 都事, 節度使, 兩界의 虞候·評事에 대한 給祿 規定 등이 있다. 그리고 百官祿俸의 頒賜는 廣興倉에서 行해졌다. 京官職은 말할 것도 없고 觀察使, 都事, 節度使, 兩界의 虞候·評事 등의 祿도 역시 京倉에서 支給되었다. 兩界赴防軍士의 祿도 京中에 支給되었던 것인데 世宗 19年에 京中에 人馬의 往來와 轉輸에 弊端이 많다 하여 所居 州倉에서 給祿키로 하였지만,<sup>(26)</sup> 이것은 어디까지나 例外 措處이며 모든 祿俸은 廣興倉에서 支給한다는 原則이었다. 그러면 모든 祿俸을 管掌하고 있는 廣興倉의 祿俸의 財源은 어떻게 捻出되었으며, 또 그 財源의 規模는 어떠하였는지 다음에 알아보기로 한다.

### Ⅲ. 祿俸의 財源

麗末의 祿俸制는 오랜 戰爭으로 인한 國家財政의 破綻, 倭寇의 出沒로 인한 祿轉의 不行, 官僚體制 內部에서 派生된 矛盾, 특히 封君과 그 祿의 濫濫 및 宦官祿의 增大 등으로 紊亂하게 되었다.<sup>(27)</sup> 그리하여 祿俸制의 紊亂은 減俸·滯拂 등을 招來하였으며, 趙浚의 上疏에서, 「三百六十石을 받아야 할 宰相이 오히려 二十石에 不過하다」라고<sup>(28)</sup> 지적되고 있을 程度이니, 麗末에 祿俸制가 제대로 行해지지 못한 당시의 實情을 대략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그리하여 麗末의 田制改革이 지니는 財政政策上의 意義는 國家財政의 基礎를 確保하여 軍資와 祿俸의 充實을 꾀한 것이었다. 麗末 恭讓王 元年에 量田을 마치고 그 分配에 대한 趙浚의 上疏에서, 東西 兩界를 除外한 六道의 墾田 50萬結 중 祿俸을 위하여 10萬結을 左倉에 소속시키도록 建議하고 있다.<sup>(29)</sup> 그러나 田制改革 당시 左倉 즉 廣興倉에 소속될 位田인 祿科田이 얼마만큼 배정되었는지는 자세치 않다.

(26) 世宗實錄 卷 78, 世宗 19年 8月 己丑條.

(27) 李熙德, 高麗 祿俸制의 研究, 李弘植博士回甲記念 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1969. p. 199.

(28) 高麗史 卷 78, 志 32, 食貨 1.

(29) 上同.

新王朝가 開創하여 太祖 7年에 王이 都堂에 各品 祿科田의 數量을 加定하도록 命하였을 때, 諫官 朴信 등이 上言하기를, 殿下께서 祿俸의 不足으로 戶曹 給田司에 命하여 祿科田을 加定하도록 하라는 것은 至當한 일이지만 軍資 所屬의 田結이 不過 10萬結인데 每양 陳損되어 租入이 줄어들었으니, 만약에 또 軍資田으로서 祿科田에 移定한다면 장차 어떻게 對應하겠는가라고<sup>(30)</sup> 應酬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建國初에 祿俸의 財源은 아직 不足하였으며, 國家의 豫備財源이라 할 軍資田도 10萬結에 不過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太宗 2年에 司諫院의 上疏에 의하면, 祿俸의 充當을 위하여 軍資田租 뿐만 아니라 畿外의 軍役田, 外役田, 津·驛·院·館·紙匠田 등에서 거두어들이는 稅도 모두 祿轉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建國初의 祿科田의 結數는 잘 상고할 길은 없지만, 太宗 2年에 司諫院이 時務數條를 上疏하면서, 「國家는 처음 田制를 定할 때 軍資 소속의 田結을 祿俸 소속의 田結보다 倍로 삼았는데 近來에 每양 祿俸이 不足되면 軍資田租에서 充當하고 있는 形便이며, 一年 祿俸의 總額은 12萬結에 達한다」<sup>(32)</sup> 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다. 앞서 引用한 바와 같이 朴信의 上疏에서 軍資 소속의 田結이 10萬結이라 하였고, 司諫院의 上疏에서는 당초에 軍資 소속의 田結은 祿俸 소속 田結의 倍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建國初에 祿科田의 結數는 아마도 5萬結 정도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政府는 祿俸의 不足을 메꾸기 위하여 祿科田을 增額하기도 하였다.<sup>(33)</sup> 그러나 항상 祿俸의 財源은 不足하였으며, 그 不足된 財源을 메꾸기 위하여 祿轉이 行해졌는데 每年 祿轉의 田結은 얼마나 되었는지 자세치 않다. 다만 太宗 13年에 戶曹의 啓請에 의하면, 豊海道의 移屬軍資位田 3萬 9千結 내에 祿轉位田이 1萬 2千餘結이나 되었다 하고, 西北面 附近과 黃州, 安岳等處의 祿轉位田을 延安, 白川 等處에 옮기도록 決定하고 있는 것으로<sup>(34)</sup> 보아 全國적으로 相當한 수량의 祿轉位田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太宗年間에 祿俸의 支給 對象은 東班 520餘員, 西班 4,170餘人, 正職이 아닌 祿官, 檢校散秩, 宗室·宗親·駙馬·外戚諸君과 功臣 등이며, 그들에게 祿俸을 支給하기 위해서는 10萬石 내지 12萬石의 財源이 必要하였다.<sup>(35)</sup> 그리고 祿俸의 財源 捻出을 위하여 약 5萬結의 祿科田과 數萬結의 祿轉位田이 配定되어 있었으나 항상 祿俸의 財源이 모자라서 軍資田租에서 充當하는 形便이었다. 그리고 이 財源은 各道에서 京中 廣興倉으로 漕運되어 頒給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太宗年間에 私田 下三道 移給問題가 提起되었을 때에는 私田을 畿外에 移給해야 할 理由로서 漕船의 敗沒을 들었고 이 漕運이 실로 祿俸 때문이라고 主張되기도 하였다. 私田이

(30) 太祖實錄 卷 13, 太祖 7年 4月 己卯條.

(31) 太宗實錄 卷 3, 太宗 2年 2月 戊午條.

(32) 太宗實錄 卷 5, 太宗 3年 6月 壬子條.

(33) 太宗實錄 卷 17, 太宗 9年 正月 壬申條.

(34) 太宗實錄 卷 26, 太宗 13年 8月 乙亥條.

(35) 定宗實錄 卷 4, 定宗 2年 4月 辛丑條.

下三道에 移給되자 祿科田과 軍資田이 畿內에 交換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世宗 13년에 下三道에 移給된 私田이 다시 畿內에 還給될 때, 全羅道에서 上納할 兩倉의 祿轉 및 軍資米의 數를 量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sup>(36)</sup> 보아, 한 때 畿內에 移給되었던 祿轉位田 및 軍資田이 다시 下三道로 還給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祿俸米는 각 地方에서 漕運되었거니와 春孟朔의 祿俸은 京中에서 가장 가까운 忠淸道米로서 支給되었으며, 그러기 위해서 忠淸道에서는 每年 歲前에 京中에 祿俸米를 漕轉해야만 했고, 그 때문에 道內 農民이 심히 괴로워 했던 것이다.<sup>(37)</sup>

그러나 祿科田인 廣興倉位田은 世宗 27년에 國用田의 制度로 바뀌었다. 全國의 土地 중, 中央 및 地方의 一定한 國家機關에 그 收租權을 넘겨준 田地와 個人 收租權者에게 收租權을 넘겨준 私田을 除外하면, 나머지는 全部 國庫收租地가 된다. 그런데 高麗時代 이래 朝鮮 初期에 이르기까지, 이 國庫收租를 統一된 全體로 하지 않고, 그 用途에 따라 몇개의 倉庫를 따로 設定하고, 이것들을 各司位田이라 불렀었다. 이 各司位田의 制度는 여러 가지 不便이 있었기 때문에 結局 世宗 27년에 이를 廢하고 國用田이라는 概念으로 統一하였다. 國用田 제도 이후에도 물론 個別的 倉庫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종래의 分立性을 廢止하고 統一된 國家財政體系에 의하여 運營하게 된 것이다. 廣興倉位田은 國用田의 制度가 實施되자 이에 合流되었겠거니와 國用田 제도 이후에도 官員의 祿俸은 항상 國家財政中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祿俸의 總額은 世祖 이래 더욱 팽창되어갔다. 癸酉靖亂을 비롯하여 叛亂의 鎮壓, 野人征伐을 통하여 頻번히 功臣이 冊封되고 高級 祿俸受給者들이 增加하였으며, 이에 따라 祿俸額은 크게 팽창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睿宗 元年에 都承旨 權域의 上疏에서, 一年 동안 朝臣 祿俸의 總額이 全國 一年間 貢稅의 倍나 된다 하였고,<sup>(38)</sup> 成宗 4년에 侍讀官 成健의 上啓에서 一年 頒祿의 數量이 옛날보다 2萬5千餘碩이나 增加되었다고 하였다.<sup>(39)</sup> 그리고 明宗 21년에 特進官 兪絳의 上疏에서, 당시 一年 百官祿俸額이 14萬名이나 된다 하였다.<sup>(40)</sup> 이와 같이 建國初 이래 京中 祿俸 總額이 10萬石 내지 12萬石이었던 것이 世祖·成宗 이후 14萬石 程度로 팽창되었던 것인데, 中宗·明宗年間に 있어서 年 14萬石이라는 祿俸 總額은 당시 國家財政에 있어서 一年 收稅額 26·7萬石의 半額에 해당되는 것이었다.<sup>(41)</sup> 그리고 祿俸과 軍資와는 不可分의 關係가 있었으니 참고 삼아 朝鮮前期에 있어 軍資의 備蓄量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建

(36) 世宗實錄 卷 51, 世宗 13年 正月 己丑條.

(37) 世宗實錄 卷 74, 世宗 18年 7月 辛丑條. 世宗實錄 卷 79, 世宗 19年 12月 丙寅條. 世宗實錄 卷 80, 世宗 20年 2月 甲戌條.

(38) 睿宗實錄 卷 6, 睿宗 元年 6月 乙丑條.

(39) 成宗實錄 卷 28, 成宗 4年 3月 辛卯條.

(40) 明宗實錄 卷 33, 明宗 21年 10月 己巳條.

(41) 中宗實錄 卷 55, 中宗 20年 11月 庚午條에서, 中宗 20年 당시 1年 收稅額이 27萬餘石이라 했고, 明宗實錄 卷 2, 明宗 即位年 正月 庚申條에서, 當該年 田稅 所出의 米太 合計 26萬餘石으로 報告되어 있다.

國初에 50萬石이었던 것이 世宗 때에는 20萬石, 文宗 때에는 10萬石으로 줄었던 것이나 世祖 때에 劃期的으로 軍資의 確保에 힘써서 世祖 末에는 軍資가 90萬石에까지 達한 바 있었다. 그 후 成宗 中期에는 50萬石이었고, 中宗 末에는 30萬石, 明宗 때에는 10萬石 정도의 備蓄이 있었다 한다.<sup>(42)</sup>

한편 外官에 대한 報酬는 京官의 祿俸과는 달리 取扱되었다. 다만 京官으로 兼差되는 觀察使, 節度使, 都事 등과 兩界의 虞候·評事는 특별히 京官祿으로 支給되었다. 그리고 外官의 祿制는 定額이 없어 各道 守令의 所俸은 그 出處가 同一하지 않았다. 地方財政에 있어 州縣 등의 官衙에는 地方官의 祿으로서 衙祿田, 賓客의 招待를 위한 公須田 그리고 不足된 官衙經費를 補充하는 官屯田이 있었으며, 諸營鎭에는 衙祿田·公須田이 없고 다만 官屯田만이 있었다. 그리하여 諸營鎭에 있어서는 官屯田의 所入을 使用하고 單兵·水使鎭과 獨鎭인 僉使·萬戶鎭과 虞候·軍官·教官 등은 軍資에서 支用을 充當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衙祿田·公須田·官屯田 등의 所出은 그 用途에 있어서 分명한 區分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으며, 그 밖에 必要에 따라 軍資에서 地方官衙財政의 不足을 補充하였던 것이다.

世宗 初에 당시 州縣의 1年 總經費는 8萬餘石이었다는 당시의 衙祿田 總結數가 2萬結이며, 그 收入이 4萬石에 達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州縣의 衙祿과 公須의 對比는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年 4萬石 정도가 守令의 廩祿 등으로 支給된 것이라 할 것이다. 州縣만이 아니라 驛·站·院·渡 등에도 모두 有役人田이 있었으니 驛에 長田·副長田·急走田, 站에 水夫田, 院에 院主田, 津에 津夫田 등이 그것이며, 站에는 衙祿田도 配定되어 있었다. 그러나 地方 鄉吏에게는 料祿이 없었다. 建國初에는 外役田으로서 5結 미만의 人吏位田이 支給되어 있었던 것이나, 世宗 27年에 各司位田이 革罷되면서 人吏位田도 革罷되어 이 때로부터 公式的으로는 鄉吏에 대한 應分の 報酬가 廢止된 것이다. 鄉吏들에 대한 無報酬가, 필경 그 生活上의 保障이 전혀 없기 때문에, 官威를 빙자하여 人民을 위협하거나, 經理의 不正으로 利得을 취하며, 私慾을 마음대로 하여 큰 弊端을 자아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平安·咸鏡道에 두어진 土官에도 地祿이라 하여 6結 以下の 田地가 支給되어 있었으며, 世宗 27年에 外方諸道의 兵正·倉正·獄正·客舍正 등의 人吏位田이 革罷되었는데도 兩界 土官의 地祿은 世祖 때까지는 그대로 계속 給與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상에서 祿俸의 財源으로도 京官祿과 外官祿은 分明히 區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建國初에 廣興倉位田이 약 5萬結이었으나 祿俸의 財源이 모자라 祿轉으로 補充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흔히 軍資에서 轉用하는 것이 例事이었다. 그러나 世宗 27年에 各司位田이 革罷되고 國用田의 制度가 施行되면서 廣興倉位田도 國用田에 合流되었거니와 國用田制度 이후에도 國

(42) 拙稿, 朝鮮初期屯田考, 歷史學報 29輯, 1965. p. 111.

家財政에 있어서 祿俸은 항상 그 大宗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京官의 年支給 祿俸 總額은 初期에 10萬石 내지 12萬石이었으나 世祖·成宗 이후 약 14萬石으로 팽창되었다. 그리고 中宗·明宗年間の 統計에 의하면 年 田稅收入의 약 半額이 祿俸으로支給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世祖·成宗 이후 年 祿俸 總支給量이 팽창된 때를 같이하여 祿俸制가 紊亂해 갔던 것이니 다음에서 詳述기로 한다.

#### IV. 官僚體制의 解弛와 祿俸制의 紊亂

朝鮮初期에 걸쳐 整備된 祿俸制는 世祖·成宗때 이래 官僚層의 增加에 따라 紊亂해지기 시작하였고, 政治權力을 少數 高級官僚에게 集中시켰던 集權的 官僚體制가 崩壞되어 갔다. 世祖가 王位에 나아가게 된 것은 平和的인 政權交遞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의 非常手段에 의한 王位 篡奪에 有功한 자를 비롯하여, 그가 政權을 攬하고 있는 동안 두 차례에 걸친 叛亂에 殊勳을 세운 有功者의 處理에 汨沒하였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었다. 世祖는 그의 即位初에 이미 革罷된 檢校의 復設을 비롯하여, 有功者에게 祿俸을 주기 위하여 功臣과 功臣嫡長 및 東西班 堂上官 등에게 奉朝請의 法을 베풀어 散官祿을支給하였으며, 이제까지 數的인 制限이 堅持되어 오던 堂上官을 急激히 增加시키면서 「階高職卑」의 行職을 大幅 除授하였던 것이다.

檢校는 建國初 이래 勳官으로서 크게 物議를 자아내고 있었으나, 太宗 16년에 一般 檢校職이, 世宗 25년에는 內侍府 檢校職이 革罷되었던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런데 世祖는 同王 元년에 原從功臣을 職窠 不足으로 모두 採用할 수 없다 하여, 그 중 年老하여 政事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한 臨時措處로서 檢校 復活의 길을 열었다. 그리하여 世祖 2년에는 世祖의 傳旨에 따라 吏曹에서는 東西班 檢校職 除授節次啓目を 마련하여 이를 施行하게 하였다.<sup>(43)</sup> 이와 같이 世祖가 政權을 잡은 뒤에 檢校를 復設하였는데 그것은 실제 檢校 元來의 特殊功勳에 대한 勳官으로서의 性格보다는 이른바 「檢校去官」이라는 退職者 待遇의 한 手段方法이라는 性格이 濃厚하였다.<sup>(44)</sup>

다음 奉朝請은 원래 官이 一品에 이르고 나이 70 이상으로 致仕하지 못한 자에게 几杖을 賜하는 制度이다.<sup>(45)</sup> 그런데 世祖 3년에 많은 功勞者에게 祿俸을 주기 위하여 功臣, 功臣嫡長, 東西班 堂上官에게 奉朝請이라 하여 科를 낮추어 給祿하는 제도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6)</sup>

(43) 世祖實錄 卷 6, 世祖 2年 6月 壬寅條.

(44) 韓洵, 勳官「檢校」考, 震檀學報 29·30合併號, 1966. p. 114.

(45) 世宗實錄 卷 88, 世宗 22年 3月 戊午條.

(46) 世祖實錄 卷 8, 世祖 3年 7月 丙寅條.

功臣	功臣嫡長	東西班 堂上官
正 一 品→正三品 五科	正 一 品→從四品 八科	正 一 品→從四品 八科
從 一 品→正三品 同五科	從 一 品→正五品 九科	從 一 品→正五品 九科
正 二 品→從三品 六科	正 二 品→從五品 十科	正 二 品→正七品 十三科
從 二 品→正四品 七科	從 二 品→正六品 十一科	從 二 品→從七品 十四科
正三品堂上官→從四品 八科	正三品堂上官→從六品 十二科	正三品堂上官→正八品 十五科
		行 上 護 軍→從八品 十六科
		行 大 護 軍→正九品 十七科
		行 護 軍→從九品 十八科

위의 같이 功臣, 功臣嫡長, 東西班 堂上官에게 散官祿이支給된 것이려니와 奉朝請의 祿科에 있어 功臣은 4等을, 功臣嫡長과 東西班 堂上官은 각각 7等을 낮추어支給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世祖 때부터 行職이 大量 除授된 事實이다. 「階高職卑」의 行職이 시작된 것은 定宗 때부터의 일이다.<sup>(47)</sup> 그러나 太宗·世宗年間에는 一資 一級도 가려이 除授되지 않았으며, 守職은 있으나 行職은 없었다는 것이나, 世祖는 非常手段으로 王位에 올라 庶政을 刷新하는 過程에서 많은 有功者가 있었으며 많은 下級者가 갑자기 高位官職에 오르게 되었고, 慶事 때마다 百官의 資級 陞進에 恩寵이 베풀어졌으며 많은 宗親에게 資級을 미치게 하였다. 그러므로 世祖 때 이래로 散官이 賤해지고 實職이 貴해지며, 行職이 많아지고 守職이 적어졌으며, 드디어 行職 堂上官만 增加되었을 뿐 아니라 三品 以下の 官員도 오래 지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sup>(48)</sup>

그리하여 成宗初에 東西班 堂上官의 數는 그 定員의 약 4배나 되는 3百名에 이르렀으며, 당시에 堂上官으로 行職 八·九品을 받은 자만도 거의 百餘名에 이르렀다는 것이다.<sup>(49)</sup> 그들은 대개 朝臣中の 舊臣이거나 혹은 叛亂 平定の 有功者, 혹은 治郡에 成績이 優秀한 者, 혹은 勳臣·戚里의 後裔들이기 때문에 이를 可히 버릴 수도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世祖初에 그토록 크게 길을 열어놓았던 檢校·奉朝請 등의 散官祿이 經國大典의 規定中에는 15員의 奉朝賀만으로 굳게 그 門을 닫아놓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行職이 濫授되어 3百餘名이나 되는 堂上官이 職事가 없이 八·九品의 下位職을 受職하고도 安然하고, 다만 후일 다시 陞進할 것만을 꾀하였던 것이니, 소위 行職堂上이라 불리우는 그들은 養病·養老·養閑의 職을 누리는 것이었다.

世祖가 非常手段으로 政權을 잡고 또 그 政權을 鞏固히 할 때까지는 그에게 忠誠을 다한

(47) 定宗實錄 卷 6, 定宗 2年 12月條.

(48) 成宗實錄 卷 82, 成宗 8年 7月 壬午條.

(49) 上同.

有功者들에게 檢校의 復設로서, 또는 奉朝請의 除授로서, 또는 慶事가 있을 때마다 百官에게 陞進의 惠澤을 주는 등 여러가지 恩寵을 베풀었다. 그러나 그의 末年에는 同王 12년에 職田法의 施行으로 散官에 대한 土地의 班給을 없애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復設된 檢校를 없애고, 넓히 恩寵을 베풀던 奉朝請의 제도를 不過 15員의 奉朝賀로서 散官의 處遇를 制限시키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官僚層의 各박한 處地를 감싸주는 것으로 行職의 濫濫이 恣行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職任이 없는 官員은 모두 西班軍職인 遞兒職을 卑品으로라도 受職하여 受祿하며, 뒷날 陞進의 機會를 엿보는 것이었다. 또 西班軍職은 一定한 職任이 없는 것이어서 閑散·未官者에게 마음 가볍게 差授되는 것이었다.

世祖 때부터 行職의 濫除에 따라 紊亂해지기 시작한 官僚體制는, 成宗 때에 深化되고, 燕山君 때에 이르러 더욱 甚해졌다. 燕山君 때에 內侍府나 宣傳官에 遞兒가 加設되었을 뿐 아니라 捕雀人, 工曹·戶曹의 假郎官, 瑞忽臺의 監役 등에게 恣意로 遞兒受祿하게 했다. 그리하여 燕山君 때부터 軍職遞兒라는 새로운 用語가 登場하게 되었거니와 軍職遞兒가 濫給되고 遞兒職은 堂上官 및 朝士의 無所任者를 위한 收用處가 되다싶이 하였다.<sup>(50)</sup> 이어 中宗反正은, 燕山君이 臣下들에게 쫓겨나고 대신 그 아우가 들어서서 王이 된 것이니, 王權이 極度로 弱化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中宗初에 靖國功臣에게 軍職遞兒를 受職케 하고 受祿하게 하는 恩典이 베풀어졌을 뿐 아니라, 이때 이래 冗官의 數는 많아지고 無爲徒食하는 食祿者가 더욱 많아졌다. 그리하여 大多數 軍兵의 遞兒職은 文官에게 奪給되었다. 이와 같이 文官이 西班軍職의 遞兒職을 受職하는 것을 送西라고 하거니와, 送西에 의하여 西班軍職은 軍兵의 定員이라기 보다 職任이 없는 官僚層으로 하여금 受祿하게 하기 위한 職窠가 되고 말았다. 즉 官僚體制가 紊亂해지면서 西班 遞兒職은 官僚層의 待期發令 내지는 豫備職과 같은 性格으로 變貌해 갔던 것이다. 그리고 西班 遞兒祿에는 軍職陞降이라는 挾雜이 뒤따랐다. 즉 혹은 八品으로 送西된 자가 六品으로 陞付되는 등 有勢力者는 오래 高品으로 付祿되다가 하면, 이에 反하여 無勢力者는 마땅히 高品으로 付祿되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下品에 付祿되는 경우가 많았다. 朝鮮王朝는 文武兩班의 官僚體制라고 하지만 사실상 文官이 武官보다도 훨씬 優位의 地位를 차지하기 마련이었고, 高位 武官職에는 高級文官으로 兼任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世祖·成宗 때부터 침식되기 시작한 西班職은 中宗 때쯤에 이르러서는 거의 文官의 送西에 의하여 獨占되다 싶이 되었고, 遞兒職을 中心으로 祿俸制가 紊亂되었던 것이다.

朝鮮王朝에서는 그 政治權力이 堂上官이라는 少數 高級官僚에게 集中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高級官僚의 數的인 制限은 兩班社會의 身分秩序를 維持 確保하는데 必要한 것이었다. 堂上官은 主要 官署의 責任者가 되었던 것은 물론이며, 그 밖에 屬衛門인 雜多한 官廳의 責任者도 大部分 少數의 高級官僚인 堂上官이 提調라는 이름으로 兼任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50) 拙稿, 朝鮮前期 遞兒職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35·36合輯, 1967. pp. 208—216.

같은 兼任制는 해당 官署의 所掌 職務의 性格과도 關係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政治權力을 少數 高級官僚에게 集中시키며, 官僚에 대한 祿俸의 節減이라는 實質的인 利得과도 有關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高級官僚인 堂上官에게는 많은 特典이 부여되었다. 科田(職田)이나 科祿에서 多額을 賜授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蔭子弟, 薦擧, 追贈, 贈諡, 奉朝賀, 自己 妻子孫의 限品叙用 등에 있어서 여러가지 特典이 베풀어졌다. 그러므로 高級官僚인 堂上官으로의 승진에는 여러 가지 身分上의 制約이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治績上의 좋은 評價를 받아야만 했다. 그 治績上의 評價란 원래 地方官인 守令을 거치지 않고서는 四品 이상에 陞進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sup>51)</sup> 守令職은 高級官僚로 승진하는데 있어서 不可缺의 過程이었고, 高級官僚를 꿈꾸는 모든 官僚에게는 守令 在任中에 治績上의 좋은 評價를 받아야만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連繫性을 巨視的으로 보면 朝鮮王朝는 少數의 堂上官을 頂點으로 하는 官僚體制이며, 이러한 堂上官을 頂點으로 한 集權의 體制로서 地方官인 守令을 統制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守令에게는 一定한 祿이 없고 府·大都護府·牧·都護府에는 각각 50結, 郡·縣에는 각각 40結의 衛祿田이 配定되어 있을 뿐이며, 守令에게 善政을 期待하는 것은 治績上의 評價와 聯關지어지는 것이었고, 守令은 治績上의 評價에 따라 罷職, 無祿官, 陞進 등으로 人事措置를 받았던 것이다.

朝鮮前期를 통하여 少數의 堂上官을 頂點으로 하는 政治權力의 集中體制에는 새로운 變化가 일어났었다. 初期에는 비교적 少數의 高級官僚로서 官僚體制가 維持되었던 것이나 世祖 이후 行職의 除授가 濫發되면서 行職堂上의 數가 定員의 4배에 達하게 되자 少數 高級官僚에 權力을 集中시킨 體制는 限界點에 到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堂上官의 權威가 땅에 떨어지자 守令이 堂上官에 대한 魅力을 잃게 되고 中期 이후로는 官紀를 바로잡지 못하며, 그 任期中의 完全과 私利에 熱中하는 傾向이 많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結 語

以上으로 朝鮮前期의 祿俸制에 대하여 祿俸의 支給對象과 그 範圍, 祿俸 頒給의 內容과 節次, 祿俸의 財源 그리고 官僚層의 增加에 따른 祿俸制의 紊亂 등을 中心으로 살펴보았거니와 이제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祿俸制에 있어 祿과 俸의 區分이 있어, 3個月마다 四孟朔에 頒給되는 것은 祿이며, 每 1個月 單位 이하로 支給되는 경우는 俸이라 생각된다. 祿俸의 支給對象은 宗親·異姓封君으로부

(51)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條「承文院官員 寫字吏文特異者 弘文館官員 諸道教官及遞兒職外 非經守令者 不得陞四品以上階」

더 文武官吏, 雜職, 工匠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한 것이었는데 祿俸이 한결같은 原則에 의하여 支給되는 것이 아니었다. 祿俸의 種別로는, 대체로 東班職의 實職에 따라 頒賜하는 科祿, 西班職과 雜職의 遞兒受職者에게 支給되는 遞兒祿, 그리고 散官祿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그리고 祿俸制는 원칙적으로 京官祿을 위한 制度이며, 다만 觀察使, 都事, 節度使 등의 地方官에게 給祿된 것은 그들이 京官으로서 外官에 兼差되었기 때문이다. 地方 州縣의 守令에게는 衙祿田이 있으며 守令의 所俸은 각각 그 出處가 同一하지 않으며 一定한 基準이 없었다. 兵水使 以下の 鎭將에게는 所俸이 없어 放軍收布가 盛行하게 되었으며 各色 胥吏에게도 料祿이 없어 그 弊害가 많았던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아울러 祿俸制를 통하여 朝鮮王朝의 中央集權體制를 새삼 再確認하게 된다.

實職에 따라 頒給하는 科祿의 內容은 經國大典 戶典 祿科條에 詳細하게 規定되어 있거니와 18科로 나누어 四孟朔에 頒給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遞兒祿은 番次나 都目과 密接한 關係下에 祿俸이 支給되는 것이며, 위로는 實職과 같이 四孟朔마다 頒祿되는 경우로부터 아래로는 月俸을 받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多樣하게 支給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散官祿은 本品科보다 3等降 혹은 5·6等降으로 支給되었거니와 建國初 이래 數 많은 散官祿 對象者를 줄이어 經國大典에 이르러서는 奉朝賀 15員으로 그 人員은 極히 制限되었다. 頒祿의 節次는 告身을 통하여 東西班은 각각 吏曹와 兵曹에서 祿牌를 받아 京中의 廣興倉에서 頒給되는 것이 原則이었다.

祿俸의 財源은 建國初에 廣興倉位田이 약 5萬結이었으나 祿俸의 財源이 不足되어 祿轉으로 補充하고 軍資에서 轉用하였다. 그러나 世宗 27年에 各司位田이 革罷되고 統一된 國家財政體系에 의하여 運營하고자 한 國用田의 制度가 수립되었거니와, 그 이후에도 祿俸은 國家財政에 있어 항상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初期에 京官에게 1년에 支給된 祿俸 總額은 10萬石 내지 12萬石이었으나 世祖, 成宗 이후 약 14萬石으로 팽창되었으며, 中宗·明宗年間의 統計에 의하면, 年 田稅 收入의 약 半額이 祿俸으로 支給된 것이었다.

朝鮮初期에 걸쳐 整備된 祿俸制는 世祖·成宗 때 이래 官僚層의 增加에 따라 紊亂해지고, 少數 高級官僚를 頂點으로 한 集權的 官僚體制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世祖는 非常手段으로 政權을 잡았고, 또 그 政權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 執權 初期에 檢校의 復役, 奉朝請 등으로 有功者에게 散官祿을 頒賜하였던 것이며, 大幅 行職을 除授하는 등 恩寵을 베풀었다. 그러나 世祖는 그의 執政末期인 同王 12年에 散官에게 給田의 惠澤이 排除된 職田法을 實施하였거니와 散官祿으로는 經國大典에 奉朝賀 15員만으로 極히 制限시키고 말았다. 이와 같이 散官祿이 排除된 反面 成宗初까지에 行職의 濫濫은 대단하여 소위 行職堂上이 定員의 4배를 넘게 되었다. 그리하여 東班의 散官은 西班遞兒職을 侵蝕하게 되니, 西班遞兒職은 官僚層의 待期發令處 내지 豫備職과 같이 되어 버렸으니, 곧 一定한 身分의 特權을 官職으로써 保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祿俸制는 西班遞兒職을 中心으로 紊亂하게 되었다.

한편 朝鮮王朝의 政治權力은 堂上官이라는 少數 高級官僚에 集中되어 있었으나 行職堂上の 增加로 그 中央集權的 集權體制가 무너지면서 政治紀綱이 紊亂해지기 마련이었다. 例컨대 高級官僚에 陞進하기 위해서 반드시 守令職을 거쳐야만 했고, 守令在職中 治績에 좋은 評價를 받아야만 보다 많은 特典이 부여되는 堂上官에 승진되는 것이며, 堂上官을 원하는 그들을 통하여 地方行政에 있어 善政을 期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官僚層의 增加에 따라 行職堂上官이 定員의 數倍에 이르도록 除授되면서 堂上官의 權威가 땅에 떨어졌다. 이에 따라 少數 高級官僚를 頂點으로 하는 集權體制가 무너지고 官僚體制가 解弛되며 政治紀綱이 紊亂해진 것이라 할 것이다.

# A Study of the Salary System in the Early Yi-Dynasty

Lee, Jae-ryong

## Summary

This is a study of the kinds of salary in the early Yi-Dynasty; the extent of allowances, their financial sources, and the chaotic aspects of the salary system after the reign of Se-Jo (世祖).

As to the range of the recipients of the salary, I could ascertain that the salary system was not established for the benefit of the officials in the provincial governments, but for the officials in the central government.

As to the types of the salary, I could confirm that there were three kinds in the salary system; the Kwa-Rok (科祿), Che-A-Rok (遞兒祿), and San-Kwan-Rok (散官祿). Kwa-Rok was granted to Dong-Ban (東班) who held the Sil-Jik (實職) in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Che-A-Rok was given to So-Ban (西班) who secured military positions. Quite often this salary was afforded to civilians, and the retired government officials, San-Kwan (散官), received San-Kwan-Rok.

As to the extent of the salary, I observed that Kwa-Rok was classified into 18 grades and was granted four times a year regularly. Che-A-Rok comprehended various kinds of allowances which covered such types of salary as Kwa-Rok and monthly pay. And San-Kwan-Rok is considered to be a type of salary lower than that of Kwa-Rok.

As to the financial sources of salary, I found that the main source of income came from the land tax, and half of the entire annual income from the land tax went to the payment of the above-mentioned salaries.

The official system in the early years of Yi-Dynasty was peculiar for its centralization enacted by a small number of Dang-Sang-Kwan (堂上官). But, since the days of Se-Jo, the numbers of Dang-San-Kwan have greatly increased and the bureaucratic government system has accordingly undergone a drastic change and declined gradually. With the result of this change, Che-A-Rok became the only source of government pay for the retired higher officials during the days of rapid growth of the officialdom. Therefore, while malpractice was carried out by government officials in the course of the distribution of Che-A-Rok allowance, the salary system in the Yi-Dynasty was soon thrown into disorder.